

第111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1號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6月8日(金) 10時43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共同住宅의 管理와 關聯된 紛爭 調定에 關한 條例(案)
2. 都市計劃施設(旅客自動車停留場)·用度地域變更決定(案)에 對한 意見 聽取의 件
3. 2001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共同住宅의 管理와 關聯된 紛爭 調定에 關한 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2. 都市計劃施設(旅客自動車停留場)·用度地域變更決定(案)에 對한 意見 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 2面
3. 2001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鐘路區廳長 提出) ..... 12面

(10時43分 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鐘路區議會 臨時會 第1次 財務建設委員會 開議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 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꽃피고 새 우는 봄인가 싶더니 어느덧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과 구민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힘드시겠지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시어 안전을 심의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의회상 구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전국이 뜻하지 않은 가뭄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 기운으로 인하여 자칫 소홀하기 쉬운 가뭄 뒤에 있을 홍수에도 미리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올림픽대교 헬기 추락사고를 교훈삼아 공사현

장의 안전사고와 홍수로 입는 재난에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두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시고 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재무건설위원회의 성공 여부는 위원 여러분의 엄중한 감시와 지역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하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민의의 수렴의 장으로서 대화와 토론을 거쳐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려내어 민주적이고도 능률적이며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축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함으로써 임기가 끝나는 날 구민 모두가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景良 議事擔當主任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金景良 議事擔當 金景良입니다. 보

고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5월 25일 鐘路區廳長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의관리와관련된분쟁조정예 관한조례(안)이 5월 30일 議長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5월 31일 鐘路區廳長으로부터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議長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金景良 議事擔當主任! 수고하셨습니다.

- 1. 서울特別市鐘路區共同住宅의管理와關聯된紛爭調定에關한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 都市計劃施設(旅客自動車停留場)·用度地域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10時48分)

○委員長 金福同 오늘의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의관리와관련된분쟁조정예 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안녕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입니다. 존경하옵는 財務建設委員會 金福同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

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예 관한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현황과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아 신축한 20가구 이상의 건축물과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제외한 건축물 즉,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해 일차적으로 주민자치의 성격인 관리주체 이른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관리주체가 자체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관리주체의 지도, 감독을 관련 과인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구 현재 공동주택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3개 단지로 형태별로는 아파트단지가 14개, 빌라 형태 18개, 주상복합형태 7개, 연립주택 4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에 의하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복지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제1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예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위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분쟁 발생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유도하여 입주자 등 다수가 만족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 운영을 자문할 수 있는 "공

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조직위원회 구성, 심사·조정대상 등 총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심사·조정 및 자문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호선사항, 각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과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분쟁 조정신청 사안에 대해 조정위원회에서의 처리 및 조정안 작성 기간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조정안 수립시 각 당사자에게 통보 및 수락 여부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종로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에관한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정과 자문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유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통적인 이익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건전한 공동체 인식 정착과 주거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아름다운 종로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金福同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共同住宅의管理와關聯된紛爭 調定에관한條例(案)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1년 5월 25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99년 10월 30일 법이 개정됨에 따른 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분쟁조정위원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자격 요건은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조교수 이상, 건축사, 세무사, 구의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권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 심사 및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모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여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는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기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관리령의 주요 요지를 살펴드리겠습니다. 관리의 목적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두 이 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령 제9조의2에 보면 본 조례의 구성 모법인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 시장 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항, 분쟁조정위원회의 구

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명령조정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7입니다. “시장 등은, 시장에 구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조정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권입니다. 여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호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반조치와 예산·결산의 처리, 그리고 6호에 보면 입주자 등의 상호간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이렇게 해서 조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 제정에 필요한 통지기간 등에 대한 규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규정입니다. 3항에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동주택이란 어떤 것인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보면 공동주택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령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건축법 별표의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네가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런 종류가 단독주택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5층이상), 연립주택은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이면서 20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연면적 660㎡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령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적용범위는 도심재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건립한 공동주택 기능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관리비 징수, 수선충당금 징수, 적립, 기타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할 수도 있고 입주자 대표인 자치관리기구에서 할 수도 있고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달려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체가 반드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주체라든지 임대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관리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에서 정한 관리규약안에 의거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 의결 및 조정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 자문기구는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9조까지는 제안설명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제10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0조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찬반 의사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행정절차법에서 살펴보던 바와 같이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 의견제시는 행정절차법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12조에는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담과 부담은 상당히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부담을 할 것인지 부담을 할 것인지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의 모범 규정은 공동주택 분쟁에는 1차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부 조정하고(령 제10조), 2차적으로 구청장이 감독적 조정권(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7)을 행사하며 본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청장의 조정권 행사과정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기능 외에 심사와 조정기능까지 부여하여 위원회제도의 장점인 민주성, 합의성 등을 최대한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조정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한 규정의 기간에 대하여 조정통지사항은 당사자 간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기간을 충분히 주는 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제12조의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신청자 부담이 원칙이나 조례안에서는 신청자 부담으로 규정하여 전액 부담이 아닌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부담으로 수정하는 안도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존경하옵는 財務建設委員會 金福同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委員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구 관내 평창동 148-1 외 10필지, 면적 7,736㎡의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해제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건설부고시 제77호('77. 2. 28) 및 서울시고시제278호(1979. 6. 26)로 각각 노외주차장 및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1981년 5월 해당 토지소유자와 유성운수(주)가 임대계약 체결 후 노선버스 135번의 차고지로 사용해 왔으며 1986년 6월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차고지 사용이 해지되었으나 유성운수가 계속 점유 사용자 토지소유자가 쟁송을 제기함에 따라 '88년 11월 명도승소 판결 후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후 '90년 4월부터 토지소유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해제 민원이 접수되어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었고 '98년 4월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유성운수의 대체차고지 미확보 등으로 해제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후 2000년 10월 재차 해제민원이 접수되어 유성운수측에서 은평구 수색동 253-25호 소재 서울시 은평권역 공영차고지(관리자:서울시시설관리공단)내에 임대기간 3년(매1년마다 갱신) 주차대수 60대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에 있어 대체차고지를 확보했다는 의견에 따라 본건을 해제 입안하여 관련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해제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2001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바 주민의견은 없으며 서울시 관계부서의 의견은 첨부내용과 같습니다. 공람·공고 이후 이번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해제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후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필지 7,736㎡중 현재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는 2필지 843㎡는 자연경관지구관리지침에 의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되고 나머지 9필지 6,893㎡는 현재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를 적용받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金福同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상정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都市計劃施設(旅客自動車停留場)·用度地域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安載弘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우선 시간이 지금 오래됐지만 도시관리국에서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타격을 주었던 여객자동차정류장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을 내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한 관련과 직원들과 과장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어차피 여기가 도로와 접한 부분 148-9 일대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자연경관지구나 또는 종전의 풍치지구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던 그 지역도 큰 의미에서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줘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安載弘委員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경관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하는 안을 서울시에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관지구로 묶여있으나 주변여건과 비교해볼 때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계획 해제절차라고 하는 것이 일시에 모

든 것을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일단 법적인 지침이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종일반미관지역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려있는 문제를 동시에 다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여객자동차 시설부지를 먼저 해지를 하고 추후에 1종일반주거지구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주변 여건과 비교해서 불합리하다면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지침에 맞게 1종일반주거지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 취지의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규제 완화나 규제 해제를 요청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장장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고생을 해서 서울시에 올린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 결정 그것도 시에서 엄청나게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데 상당히 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생각하는 바가 시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불가피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을 할 때에는 좀 길게 보고 의사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지어 도시관리국에서 굉장히 애쓰시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완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구의회 의원님 일동으로 작년에 서울시에 건의안을 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건의안에 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과거에 서울시 조례의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이 200㎡미만 토지에 대해서만 그것도 바닥면적 60㎡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40%로 완화하던 규정을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해서 67㎡ 기준을 67㎡를 올려줬고 바닥면적도 80㎡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만족할만한 수준

은 아니지만 기존의 조례안에 비해서는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들 특히 해당지역의 安載弘幹事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예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마는 평창, 부암, 명륜동, 혜화동 일대에 자연경관, 삼청동 일대에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체히 조사를 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요청안을 올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 실무부서에서 일부 보완을 좀 해서 다시 상정하라는 이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성 검토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경관지구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똑같은 경관지구이면서 규제완화나 해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수치화해라. 고도차가 나면 정확하게 얼마나 고도차가 나는지 필지면적이 정확하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희들 일반적인 자료는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보다 더, 좀더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올려달라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경관지구가 해제되면 녹지율 확보가 필수적인데 녹지율 20%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달라 하는 이러한 정도 외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목 해제나 규제완화 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의 구체적인 필지현황이나 지목현황을 상세하게 첨부해서 상정해달라는 이러한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완 사항들도 저희들이 자료를 다 첨부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다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 서울시에 요구했던 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安載弘委員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치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행정을 펴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이나 또는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을 도시관리국에서 차츰차츰 하나하나씩 해소해 나간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구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일이 처리될 때까지 도시관리국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금지를 갖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잘 처리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福同 安載弘幹事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평창동 148-1호의 10필지에 1979년 6월 26일에 주차장 모든 자동차 정류장으로 시설이 즉 말하자면 결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토지주와 유성운수 간에 분쟁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유성운수에서 즉 말하자면 이전을 안해줬고 또한 도시심의위원회에서도 적당한 차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해제를 안했는데 이제 와서는 수색에 마련되었으니까 이것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바로 그렇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錦南委員 두가지 안전을 같이 해도 되는 거죠?

○委員長 金福同 예, 하시죠.

○吳錦南委員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등관리에 관한조례(안) 7조에 대해서

제1항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60일 범위 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을 신청해놓고 심사하는데 60일 정도 걸리는 것은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40일 정도로 그 조정분쟁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40일 정도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 뜻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8조항을 보면 8조1항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조정위원회의 의견이나 종로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조사에 대해서 저는 의아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시 조사할 수 있다 이 말보다는 더 부드러운 말이 없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수사권같은 그러한 얘기가 들어있지 않는가 해서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열람한다는 것까지는 좋는데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였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입니다. 吳錦南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처리기간 중 조정심사기간이 60일이다 보니까 너무 좀 길다 그래서 조정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다 해서 40일로 단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조정신청 하는 사안 중에서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첫째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시설 설치비용을 각 주민들이 분담하는 문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했는데 임원선출의 정당성 또 자격문제 이

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만약에 이것이 행정적인 사항이라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 다루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일기간을 잡아놓은 것은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정기간을 짧게 잡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고 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사료돼서 충분히 최장기로 60일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조정을 해서 조정안을 신청자나 당사자에게 통보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40일로 단축해서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빨리 통보해주는 것도 오히려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양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60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제8조에 조정위원회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열람하거나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 라고 문맥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구가 조금 억압이 강하다. 이것을 부드럽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물으셨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정위원회가 조사한다는 표현은 조금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위원회가 소속 저희 공무원에게 가서 조사 좀 해봐라 할 수 있다는 그런 문맥입니다. 우리가 조사할 때 공동주택에서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동주택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못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위해서 이리이러한 사항을 알고 싶으니까 당신 공무원 나가서 조사해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얘깁니다. 그래서 조사할 수 있다 보다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委員長 金福同 말씀 도중에 잠깐 미안한데요 국장님! 본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조사할

수 있다, 또 간판을 철거하는데 영장을 한다 이러  
한 것은 종로구측에서 아주 묘한 것을 만들어냈다  
라구. 영장집행을 한다고 영장이 나왔더라구. 종  
로구청이 영장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간판  
철거하는데 영장, 그런 용어를 사용 안했으면 좋  
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계속 이어서 吳錦南委員님 하십  
시오.

○吳錦南委員 제10조를 보면 전문위원회 말씀하  
셨습니다마는 조정안을 작성할 때는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또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의  
사표시를 해야 한다. 찬반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정안은 그 문구를 조정  
안을 통지받은 15일 이내에, 의견 제시는 행정절  
차법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0일 기간을 정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고 아울러 12조를 보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등의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부담한다로 구분하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  
님 말씀과 같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국장  
님 뜻은 어떠신지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먼저 10조에 저희들이  
수락 여부를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로 규정  
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일로 규정해놓  
은 사유는 조정심사 기간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사  
항을 주민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분쟁을 종결하  
고자 하는 취지에서 15일로 결정했습니다마는 아  
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민들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더 주는 것 20일로 주는 것  
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충  
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사료됩니다. 다  
만 12조의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부담이라는 표  
현이 더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부담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부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  
희들이 부담이라는 용어를, 신청인이 아파트 공동  
주택이다 보니까 조정신청을 하는 분들이 한분이  
아니고 조정신청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일 것이  
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끼리 각각 부담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이나  
전문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혹시 그러면 이 표  
현을 읽는 분들에 따라서 구청하고 신청인이 나눠  
서 부담한다는 쪽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차제  
에 그렇다면 부담으로 고쳐주시면 오히려 바람직  
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吳錦南委員 10조와 12조, 10조에 15일을 20일  
로, 12조의 부담을 부담으로 또 8조에 조사할 수  
있다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安載弘幹事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載弘委員 제정근거를 보니까 2000년 7월 20  
일자 그러니까 1년 가까이 서울특별시 주택과 같  
은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지시를  
받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1년 6월 20일이  
니까 한 1년쯤 되는데 늦은 사유는 어디에 있나  
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입니다. 安  
載弘委員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 서울  
시로부터 가급적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같  
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  
지 않았고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도 분쟁조정위  
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조례안을 제정한 데가 3개  
구청이고 아직까지는 분쟁조정 실적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고 파악을 해봤더니 저희들한테도 진  
정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아직  
까지 우리 주민들의 성향상 이렇게 어떤 공식적  
인 분쟁조정보다는 편리하니까 진정민원을 이렇

게 제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게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해서 미루어왔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공동주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심심치 않게 저희 구에서도 조정의 형식은 아닙니다. 진정형식으로 작년에만 4차례 정도 이렇게 진정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진정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분쟁조정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安載弘委員** 제가 판단할 때는 이래요.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고 주택과가 이와 유사하겠죠? 공동주택에 관련한 분쟁조정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제가 판단할 때는 각 과에 소속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사실은 행정력의 낭비나 주민들이 서로 진정하고 갈등을 겪는 것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의 일례를 본다면 롯데에서 뒤에 주민들과 대단히 우리가 1년이라는 세월동안 수없이 많은 주민들이 정말 갈등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겪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과 관련지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는데 그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자 이겁니다. 건축분쟁이니까 그것도 너무 높다. 예를 들어서 지하실용, 지하실의 높이를 너무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웃간에 층고의 문제가 있다. 이럴 때 그 민원인들끼리 싸우게만 하고 민원인들 스스로 조정을 하게 이렇게 자치구에서는 들여다만 보고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건축과 관련해서 정말 주민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이 있을 때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납득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느냐 만약에 안따른다면 상급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이렇게 분쟁이 뭐 그렇게 건수가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하자 이거죠. 최근에 김홍수화백이 주택가 1종 전용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으셨거든요. 그분이 건축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야기했느냐 하면 실제로 기존에 있던 집들보다 또 대지의 지형보다 이상하게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김홍수화백 입장에서는 그게 사유승인이 안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식역이나 전반적인 뭐랄까 주거형태로 볼 때 너무 높고 그래서 갈등을 겪는 게 벌써 1년입니다. 이럴 때는 분쟁조정 신청을 하도록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면 주민들이나 건축을 시공한 사람들이 소위 겪는 갈등을 최대한 내에 할 수 있고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시관리국과 관련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러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좀 더 담당국장으로서 적극 모색하신다면 오히려 보다 더 나은 제도가 아닌가 그 제도가 있지만 활용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安載弘委員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굉장히 기피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민원인들을 만나서 조정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하여간 본인의 주장을 굽히는 경우가 양 당사자간에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 토의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 오히려 주민들이 기피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그 속에서 서로 의견을 듣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훨씬 주민들 간에 반목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통과해주신다면 지금 진정으로 접수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흡수해서 토의도 하고 해서 거기서 서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安載弘委員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와가지고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씩 조정을 해보면 그분들이 조정 자체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간에서 조정이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조정이나 타협문화에 조금 익숙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결국은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지금과 같은 민원처리방식보다는 조정위원회에 수용을 해서 거기서 같이 조정하고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사실은 대다수 주민들은 그러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을 하면 어디까지 하느냐 감사원 진정하죠. 청와대 진정하죠. 고법에 진정하죠. 건교부에 진정하죠. 그것이 다 어디로 와요? 종로구로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 낭비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각종 분쟁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정말 주민들끼리 장기간 싸우고 갈등을 겪는 그러한 일을 빨리 해소시키자. 그래야 좋은 동네가 되지 않겠느냐, 좋은 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河徹昇 都市管理局長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丁炳煥委員 議席에서 - 상임위원회 할 때 개인적으로 그만큼 사정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인의

무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빠진다면 오늘 차라리 정회하고 다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강력히 제재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이래 가지고 회의가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福同 좋습니다. 그 말씀 꼭 회의록에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일단 말없이 나가신 위원님들에 대한 약간의 경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그냥 할까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위원 있음)

安載弘幹事님! 토론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종로구공동주택관리에관한분쟁조정위원회에관한조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국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 후단 출입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수정하며 제10조제2항 15일 이내에는 20일 이내로 개정하며 제12조제1항의 분담한다를 부담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福同 安載弘委員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安載弘委員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  
로구공동주택의관리와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은 安載弘委員님이 수정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시설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會議中止)

(11時4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時30分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4分 會議中止)

(13時32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으로 먼저 각 국별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들은 후 專門委員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1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鐵路區廳長 提出)

○委員長 金福同 의사일정 제3항 財務建設委員會 소관 2001年度 第1回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董連浩 財務局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안녕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福同 委員長님과 安載弘 幹事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財務建設委員會 委員님께 정중한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제1회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 제정의 원만한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이후 경제여건의 악화 등으로 지방세 체납의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체납처분인 압류부동산의 공매에 소요되는 공매수수료를 반영하였으며 지적행정의 전산화와 대민봉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적공부의 전산화에 소요되는 장비 구입비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자면 현재 우리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14만 7,710건에 399억 6,900만 원으로서 체납관리 전담팀을 조직하여 지방세 체납정리에 전념하고 있으나 압류된 재산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는 부동산 공매의 절차가 불가피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874만 5,000원의 공매대행수수료를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부동산 공매분에 대한 공매수수료의 부족분 2,242만 2,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컴퓨터 장비구입과 관련사항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인 측량원도, 토지이동결의서 등의 지적공부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 기능향상을 해야 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장비구입비 7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金福同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우리 재무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원만한 구재정 확보와 신속하고 원활한 대민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

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福同 童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都市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河徹昇입니다. 존경하옵는 金福同 財務建設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하시고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건의사항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위주로 공원녹지분야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2001년도 당초예산액은 21억 2,933만 3,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2,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 23억 5,2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편성액 편성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105쪽입니다. 녹지관리시설비로 총 2억 2,3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악공원조성공사로 편성된 1억 5,000만원은 무악동 재개발 뒤 공터로 방치된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주민에게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하는 바 2001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3,800만원은 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무악공원조성공사는 금년 8월쯤 시행예정이나 사업비 2억 1,200만원으로는 동 토지형태 및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기반시설 개선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주변도로와 낙차가 상당히 커서 여러 가지 안전이나 용벽에 대한 보강공사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기반공사에만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반공사 후에 주민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일부 조경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조성을 위하여 편성된 7,340만원은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다시피 한 부암동 28-1(109㎡), 창신1동 78번지(62.1㎡), 부암동 265-21번지 부암동 청사 앞(20㎡), 승인1동 64-1번지(84.8㎡) 공유지상에 휴식공간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답소도 나누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金福同 委員長!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금년 한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하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福同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안녕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입니다.

존경하는 金福同 委員長님! 그리고 財務建設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오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78억 8,100만원에 1차 추가경정예산 투자사업 및 경상사업에 15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예산 중 승인동 411~431간 도로개설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상비 3억원을 금번 추경에서 경정하게 되었으며 위 공사와 연계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승인동 411~324간 도로개설공사의 예산으로 재배정하여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경상사업비로 제설용 콘베이어벨트 및 하수도 준설용 버킷 준설기 구입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 2000년부터 보상추진 중에 있는 승인동 61~59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의 미보상 토지·건물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에 따라 4억원 및 명륜3가 137-8에서 명륜4가 178-3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구간 보상비로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현재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의 노후된 설비를 보수·정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가로등 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확보와 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해 과속방지턱 도색공사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률이 높은 곳으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지역에 탄력봉 설치 및 정비비로 1,7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보행자 보호용 가드웬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8,848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 3,280만 5,000원을 편성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1년 당초 예산보다 29억 1,200만원이 감소한 270억원입니다. 그 내역에 있어서는 200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29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400만원 증가한 규모를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세입 재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분 29억 1,2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시비보조금 9억 8,900

만원 중 8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사용잔액 1억 2,000만원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계정에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계정에 주·정차단속원 임명 확대와 주택가 이면도로를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기구입으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에 대하여 주차장 건립 및 부지매입비인 적립금 계정에서 29억 8,700만원을 감소 편성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수지균형 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財務建設委員會 金福同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鍾錫 建設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蔣昭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1년도 5월 31일자 鐘路區廳長이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입니다. 작년 연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당초예산 1,518억 8,369만 9,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 77억 7,200만원을 합쳐서 48억 5,857만원이 금년 추경재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용도가 지정돼서 교부되어온 예산 편성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간주처리분이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34억 8,227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추가예산을 합쳐서 앞으로 확정될 예산은 1,602억 2,4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액의 3.13%가 증가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재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77억 7,203만 6,000원은 순세계잉여재원이 66억 7,381만 7,000원, 보조금사용잔액이 8억 4,684만 4,000원, 시설공단 추

가수입이 2억 5,137만 5,000원이 포함되어서 77억 7,203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9억 1,167만 2,000원 결손요인이 생겨서 총 29억 1,346만 6,000원이 결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196억 7,381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2001년도 기존예산에 반영한 것이 130억이고 그 외 이번 추경에 반영한 재원이 67억 7,3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별로 분석해 드리면 세입추가분이 52억 8,1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차액, 또 세외수입 합쳐서 143억 9,19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9억 5,630만 8,000원 결손이 생겼는데 결손사유는 주차장건립 부지매입비가 통상 200억 가량이 예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예산으로 213억이 이월될 것이라고 세계잉여금으로 미리 잡았는데 작년 연말에 신고동 60번지 외 9필지 55억원을 한꺼번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월액이 그만큼 감소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세출편성 점유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서 경상비가 37.8%, 투자사업비가 62.2%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가 0.34%, 시민행정위원회가 78.04%, 나머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1.60%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비는 23건에 29억 3,565만 5,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을 열거해 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13억 9,650만 5,00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이 3억 5,434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추가가 4억 5,4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총 41건에 48억 3,678만 1,000원입니다만 중요한 편성내용은 교남동청사 신축 부족분 7억 2,000만원, 종로5·6가동청사 신축 부족분 9억원, 명륜3·4가간 도로개설공사, 송인1동 61·59간 도로개설

부족분 4억원, 계동 36~원서동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 제1별관 옥상 증축에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기준을 규정한 관계법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잉여금의 처리방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는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회계법에서는 잉여금이 생길 경우에 국가채무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예산전용 범위입니다. 조금 전 승인중에 예산경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예산은 세, 항부터 목은 행정과목이라고 그래서 구청장이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세, 항 이상은 입법과목이라고 그래서 의회의 경정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투융자 심사의 의무화입니다. 지방재정법 30조에서는 10억 이상의 투자사업은 전부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의 전산장비 구입은 지금 지적과 소관 업무중에 측량도라든지 가옥대장 이런 사항을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업무량이 많아서 용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770만원 정도 추가재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무악공원 조성공사는 법정공원은 아닙니다만 법정공원은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등 10만㎡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10만㎡ 이하의 구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법정공원은 아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섬터조성공사는 네군데 전부 정식공원은 아

니지만 유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 건설은 명륜3가~4가 간 사항은 성대정문 도로를 역사탐방도로 지정해서 순환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도로에 해당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동 36번지에서 승인1동 61-59구간 도로인데 이 사항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계동 39에서 원서동 76간인데 22억 5,000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그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확보했습니다만 지장건물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 건물 두 채를 철거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보수 부족분 3,000만 원은 현재 10월까지의 기존예산이 가능합니다만 그 이후에 부족분이 예상이 돼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설용 컨베이어벨트 구매는 이것이 노후 장비인데 이걸 '94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하수도 준설기 구매도 노후준설기를 교체하는 사항인데 우리 구에는 총 7개 준설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조를 추가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2개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속방지턱 도색공사는 지난 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 살포로 인하여 도색이 많이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고 탄력봉이나 가드웬스는 경찰에서 요청사항이 많아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디지털카메라 구입인데 이 사항은 2001년 7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이 개정되어서 전 공무원에게 단속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를 전 직원에게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난방기 구입은 옛날 3~4가동사무소가 지금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단속원들의 동절기를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구입은 동 구획선이 현재 77개소 1,980명입니다만 이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0선을 추가하게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재무건설 소관 예산은 추경예산의 약 21%인 16억 3,193만 6,000원입니다. 투·융자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하여야 하나 대상사업 9건 중 7건이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기타 하수도 준설기 구매 등 노후장비 교체 등에 대하여는 구입년도, 내구연한, 현상태, 장비활용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局長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安載弘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우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예산 심의에 앞서서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이 편성된 내역 중에서 의회를 통과해서 의회에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사실 하나만 들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평창8교인가 하는 다리 신설이 하나 있었는데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지금까지 그 어떤 저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뭐 건설교통국 소속인 거 같은데 말이지요.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편성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절차나 어떤 지시나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시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난 알지도 못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관내에 도로 재포장도 그렇게 많이 수없이 공문을 보내고 포장요청을 해줘도 포장된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2월, 1월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정식으로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로 넘겨주면 그

것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1개도 이행이 안됩니다. 특히 安載弘委員이 얘기하는 것은 1개도 이행이 된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도로재포장은 왜 여태까지 안되고 있는지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다리를 놓게 한다는 것은 왜 안되고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安載弘委員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평창동 무명교에 대해서 安委員님이 5,000만원을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배정을 해주셨는데 조기 집행이 안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명교라고 지칭되고 있는 평창동의 교량은 5가구가 이용하는 그러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설치한 교량이 아닌 것으로 일단은 조사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교량을 다시 놓기 위해서는 보수가 필요한지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하고 교량을 새로 놓을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6월말까지 설계를 할 것인지 보수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빠른 기간 내에 공사가 어느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덧씩우기가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덧씩우기 공사가 19개동에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동에는 끝난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월 중순후부터 6월초까지 지금 월드컵 대비해서 오존문제 이러한 문제로 해서 아스콘 생산이 일부 중단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 포함해서 일부 늦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아스콘 수급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각 동에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하시는데 어

는 등은 되고 어느 등은 안됐다고 하는데 저는 금년에 도로포장 재포장으로 해가지고 무려 한 10번 정도의 공문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담당공무원한테 안내도를 놓고 일일이 표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장께서는 열심히 해오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특히 토목과 일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칭을 해서 미안한데 내가 오죽 속상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토목과 일은 도대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이 개천에 가서 여기 녹조가 심하니까 여기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토목과 공공인력이라도 쓸데 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자고 해도 담당계장은 알았습니다 하고 2주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요. 전화하면 내일 나가겠습니다.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래요? 토목과는 왜 그래요?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安載弘幹事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먼저 재무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채무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丁炳煥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의 채무관계는 재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상세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丁炳煥委員 재무국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재무국장님은 우리 구의 살림을 다 맡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財務局長 董連浩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구 전반적인 재정을 관리하는 곳은 행정관리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계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억 정도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

운 시기에 채무가 그렇게 해가지고 약 70억원이 라면 연간 이자가 엄청날 것인데 여기에 도로건설, 토목과 예산을 이렇게 꼭 반영을 시켜야 되는지 우선 급한 게 채무를 정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로건설 명륜3가 137-8, 명륜4가 178-3 5억원을 꼭 도로건설에 필요로 하는가 묻고 싶고 송인1동 당초 기정예산에 2억을 책정했는데 추경에 4억을 더 가중시키려고 당초예산을 2억을 잡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丁炳煥委員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가 많은데 투자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채무관계는 매년 일부씩 구 입장에서 아마 갚아나가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기반시설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편성의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송인동 공사비 투자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륜3가에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명륜3가는 기존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와 '99년도에 기 투자를 해서 17억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대명거리 역사문화탐방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대명거리가 일반통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개설한 과학관쪽의 도로가 6m도로입니다. 일부 끝부분의 90m부분이 5m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m도 통행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안했었는데 그 지역으로 마을버스까지 통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 구간까지 개설해야 하는 문제하고 해화동 일부의 막힌 도로 20m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기재정계획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90m구간하고 그 해화동쪽에 약 20m구간 막힌 도로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못다니는 그러한 골목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5억을 편성한 그런 내

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송인동 411번지에 왜 추가로 4억이 더 들어갔느냐, 그래서 송인동 61번지가 총 투자비가 14억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8억이 되어 있고 기정예산이 2억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보면 중간부분에 도로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골목이 후퇴해서 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구간까지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공사비를 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4억을 추가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부분에 4억을 보상을 줘야 저희들 도로를 공사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丁炳煥委員 당초에 기정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러한 것을 감안을 안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정예산 편성할 때 워낙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도로의 양쪽부분 6m 확보가 안된 부분의 보상비 2억원만 책정을 해서 그 부분만 공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라든지 해당 지역에서 도로를 전체적으로 개설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丁炳煥委員 그리고 계동 39, 원서동 76 2억 5,000만원은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계동의 2억 5,000은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역의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지금 주택과에서 특별회계로 8억 정도 편성되어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일반지역의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건물 2채와 일부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특별회계에서 거의 투자가 되고 일반지역에 편입된 지역의 보상비가 필요하다는 주택과의 의견이 최근에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丁炳煥委員 명륜3가 대명거리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아니죠. 대명거리 주변입니다.

○丁炳煥委員 거기 도로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도로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아까 말씀드린 5억 편성 된 것은 명륜동에 과학관이라고 있습니다. 창경궁 옆에 과학관 옆길 6m도로인데 총연장 중에 약 90m구간이 약 5m에서 5m50, 6m가 안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확대보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지역의 도로개설할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채무가 있는데 채무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노파심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洪承台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洪承台委員 丁炳煥委員님 질문에 추가부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겠지요? 종로는 어느 구보다도 이조 500년부터 내려온 낙후된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종로구 재정 가지고는 도로개설 하기가 참 한두 군데가 건박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어느 군데고 다 건박합니다. 지금 오늘 추경 예산에 5군데도 물론 필요하고 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투유자사업에 대해서 증장기계획에 들어간 사업을 우선 하고 또 현재도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진행된 도로개설에 일단은 3억이든 2억이든 5억이 필요하면 완공될 수 있는 이러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차후에 이러한 절차상 밟아서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그래서 과거에 제가 吳局長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참작해서 어느 곳을 봐도 종로바닥에 다 급하고 필요한 도로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공평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의원마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 추경예산에 얼마나, 급한 것은 급하지만 추경예산에 온다는 것은 조금 전에 질의한 과거의 공평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사업 9

건에 7건이 미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9건에 7건입니다. 그러니까 2건은 반영된 사업이고 7건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좀 어떻게 차후에는 어떠한 저희 말씀에 대해서 공평하게 그러한 것을 자세히 살펴 가지고 반영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洪承台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투자사업비를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사업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일부 반영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을 구의원님들한테 기 보고해서 사업계획을 변경된 사업하고 또한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일반지역이 포함돼서 보상이 필요해서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기 계속사업 중에 보상이 부족해서 하나 들어 있고 또 한 사업은 성대 일방통행로 확보를 위한 보상비 추가문제 그러한 문제로 해서 현장여건에 문제가 생겨서 편성이 된 그러한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洪委員님 말씀대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편성할 때 명심해서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각 지역별로 가급적 균형있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洪承台委員 吳局長님 답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명륜 5억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일방통행로 때문에 급히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이 내용 자체는 충분히 압니다. 급합니다. 안급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吳局長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급한 데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지역은 3억 내지 5억 있으면 이것 뚫고 불 안나고 소방차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을 유념하시라는 거지 더 잘 압니다. 성대 더 합니다. 일방통행로기 때문에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잘 알겠습니다.

○洪承台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본예산 때도 그런 것을 충분히 심도있게 신경을 써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그러한 의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福同 洪承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吳弼根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弼根委員 우리 존경하는 전 의장님과 丁炳煥委員님께서 충청어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해화동로터리에서 성대입구로 뚫려진 도로가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올봄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것입니다. 돼서 예산이 20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거기를 단절구간만 거기 가 보면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담이 쳐져 가지고 사람들이 못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못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터지면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겠다 해서 거기가 반영이 되고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吳局長님! 잘 모르셨어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吳弼根委員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에 吳委員님 말씀하신 지역은 내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들어가 있는데 일부 그 도로와 연결된 지선 중에 지금 막힌 도로거든요. 그래서 번지수를 적다보니까 지금 吳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번지수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중기재정계획에 번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吳委員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로와 연결된 개설 안된 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吳弼根委員 그리고 컴퓨터조성을 위해서 편성된

7,340만원이 주택과 주변 방치된 토지형질상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본 위원도 환영을 합니다마는 우리 녹지과장님! 대학로에 보도 위에 화단 조성하는 거 가보셨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예.

○吳弼根委員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일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일부만 훼손되어 있습니까? 가보시지도 않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나무가 전부 죽어 있습니다. 못보셨어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일부 그 옆에 첩스도 쳐놓고 그랬는데

○吳弼根委員 첩스를 왜 그렇게 쳐놓습니까? 대학로에는 젊은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러한 짐승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첩스가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단하게, 중구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중구는 보도 위에 첩스를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못보셨어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중구는 안가봤습니다.

○吳弼根委員 가서 타구도 보십시오. 어떻게 보도 위에 화단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중구에 가보면 지상에서 한 30, 40m 올려서 대리석으로 이렇게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나무가 하나도 손상이 안되고 첩스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로에 가보면 바로 보도 위에다 첩스를 만들어놨어요. 학생들이 막 밟고 차고 해서 살아남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쉼터 조성도 좋지만 우선 보이는 데부터 나무를 심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대학로에 지금 가로등입니까? 누가 설치했습니까? 보도가로등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플라드에 설치된 그런 내용입니다.

○吳弼根委員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吳弼根委員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로에 지적하신 내용은 대학로 역사탐방로 개념으로 시에서 설계가 돼서 저희 구에서 공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설치한 블라드가 있지 않습니까? 블라드를 기존에 둘 개념에서 탈피해서 지금 현재 뜻을 부리기 위해서 현재 안에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한 내용입니다. 유지관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문제를 시와 협의해서 보완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어떻게 대학로에다 그렇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술 한 잔 마시면 어디다 스트레스 해소를 못하니까 등에다 스트레스를 해소시킨 거예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나도 지금 남아있는 등이 없습니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弼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무악동 공원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이번까지 하면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입니다. 吳錦南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약 3억 6,100만원 그리고 설계비가 3,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吳錦南委員 시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되면 공원의 어떤 평당 넓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규체가 되어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서울 시비를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10만㎡가 넘는 공원이어야 됩니다. 그 이하는 구비를 투입해서 조성하거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런데 지금 무악동 공원조성사업은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총 면적이 약 1,714㎡ 약

820평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공원을 대체적으로 조성해놓고 보면 항상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투자를 한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들이 사실은 많아요. 나무를 심어도 또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하는 그러한 공원들이 물론 무악공원 조성하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는 무악공원 조성할 때에 약 3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무악동에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무악공원조성 기본설계도를 보면 상당히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컬러로 나온 것처럼 무악공원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먼저 공원조성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시설내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과장더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무악공원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마는 무악동 현대아파트 재개발 하면서 세입자들이 임시 이주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했다가 재개발이 완료되면서 철거하고 난 잔여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인데 거기가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쓰레기 투기장화 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지나가는 부랑인들이 천막을 치고 노숙할 이러한 우려도 상당히 큼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인근 현대아파트나 인근에 거주하시는 무악연립에 거주하시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조성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공사비가 3억 6,000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소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인근 도로와 단차가 심지어 많게는 5, 6m까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이나 옹벽 보수공사 그 다음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바닥에 포장하는 기반공사에 약 1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실제적으로 정작 편의시설

이나 조경에 투자하는 비용은 그리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이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우선 2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 배정을 해서 기반공사를 하고 또 예산의 여유가 생기면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나머지 편익시설이나 조경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만 해놓고 조경시설이나 편익시설은 안 해놓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투기장화 하거나 부랑인들이 노숙을 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차제에 이왕 공원을 조성한다면 기반공사와 아울러 편익시설과 조경시설을 같이 해서 공원 개장과 더불어 주민들이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실제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앞으로 공원이 조성되고 들어설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공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몇 평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微昇 840평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무악동 丁炳煥委員님 지역이지요? 설명 좀 해보십시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입니다. 위치는 무악동 현대아파트 뒷쪽입니다. 면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20평정도 현재 조성되었는데 당초에는 여기가 지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사람들이 접근하는 장소는 여기가 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접근 장소는 우측이 되겠습니다. 이 폭은 좁은 데는 8m, 넓은 데는 13m정도 됩니다. 저희는 이 지역을 당초에는 마을마당으로 명칭을 붙였는데 주민이 산책할 수 있을 정도가 더 좋겠다, 아니면 잠시 쉬는 공간도 좋겠다, 아니면 간단한 체력단련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입구에서 여기 중간에는 쉼터를 1~3군데 만들 계획이고 중간 여기에는 종로구청의 상징적인 광장, 광장이라고 하기에 좀 적습니다만 광장 비슷하게 상징적으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 옹벽이 한 3m 정도 됩니다. 2~3m 정도 되는데 석축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용역 결과로는 안전도에

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60m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면 쉼터를 치지 않으면 놀다가 이리로 내려가면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해서 쉼터를 치고 가운데는 산책로를 쪽 따라서 포장을 치고 주변에는 녹지를 많이 활용하고 중간에는 이진 파고라 형태로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했고 대형목을 중간에 심어서 의자를 설치하고 해서 간이 휴식을 할 수 있게 조성했고 또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은 3m로 해서 단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옹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커버하도록 하고 뒷쪽으로는 여기도 단차가 높으면 한 6m이상 될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키 큰나무를 심어서 절개지 상태를 커버하기 위해서 대형목 식재를 할 생각입니다.

○吳錦南委員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놓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가서 노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쪽으로 보면 행촌동쪽이 되겠지요? 사직동하고 행촌동 중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산책로가 조성된 데가 있는데 거기 중간이 끊긴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회과학도서관 있는 쪽에서요. 거기 산책로가 한 30m 조성되다가 나머지는 안되어 있어요. 그걸 같이 조성해서 무악동 사는 현대아파트만 보실 게 아니라 사직동이나 행촌동도 같이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산책로를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그 관계는 협의를 못 했는데 거기는 당초에 제가 가보니까 산책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곽주변에 초소가 있는데 거기는 쉼터로 막아났는데 그 밑에까지는 산책로 흔적이 있는데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협의해서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 쉼터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구청의 과장님으로 계신 분도 와 계십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동사무소 앞에 쉼터를 만들어서 참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동장님의 역할과 노력이 컸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반영된 예산으로 볼 때 20㎡이하라고 하면 한 7평 정도인데 지역 동장님들이 어떤 힘을 발휘한다면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하자면 시민상을 탄 분들이 그 자기가 받은 돈을 본인이 쓰지를 않습니다. 어디에다 기부하든지 동에서 활용하든지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게 많이 생깁니다. 다른 상을 받는 분들도 그렇고. 하나의 예입니다만 소소한 것까지 구 예산을 들어서 쉼터조성을 꼭 해야 되겠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 局長님이나 課長님은 깊이 생각하셔서 그 지역에서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는 것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폭넓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安載弘委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목과에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저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 의해서 자기 동네의 어려운 일, 또 뭔가 해야 할 일을 전부 수집합니다. 수집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보고를 합니다. 분과위원회에다. 또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고 그 회의한 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이것을 구청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뭔가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구의회에 요청할 적에 즉시 해주어야지 이것이 시일을 끌게 되면 구의원들이 한 어떤 일들은 값어치가 없게 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미리 발췌해 가지고 구에다 올리게 되면 구의원들은 전부 로보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알고 그 지역에 해야 할 일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법적인

그런 일이 아닌 이상은 가능한 빨리 시행을 해줘야 의원들이 일한 보람이 있지 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오고 개인이 해서 올라오고, 모동에선 개인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은 아무 설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한 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종로구 전체적인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지역에서 일하는 의원들이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청 직원님들도 같이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쉼터조성 문제에 대해서 局長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방금 吳錦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감합니다. 일부 동 같은 경우에 동장과 구의원님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쉼터를 조성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동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해주되 중·장기적으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그걸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유휴지 같으면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스스로 조성을 해서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쉼터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아까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투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기반시설 위주로 많이 투자가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조성 분야를 보더라도 기존에 있던 조성돼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이 많이 낡고 열악해서 기존공원을 보수하는 데 저희 공원분야만 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가 주어졌고 새로운 유휴공지를 찾아서 녹지화 하거나 공원조성을 하는데는 사실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작년부터 주민들 생활이 향상되면서 녹지공간 확충에 대한 욕구, 쉼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쉼터조성

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고 본격적으로 컴퓨터조성 사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워낙 이게 소규모사업입니다. 사실 컴퓨터조성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유휴공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워낙에 2~3,000만원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 한 5년마다 작성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2~30평 규모의 나대지를 중기재정계획이 작성될 때까지 5년 동안 기다리면서 방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컴퓨터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반영을 했고 다만 저희들이 보다 체계적인 투자는 필요하겠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유휴공지를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평 이상만 되면 전부 조사를 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컴퓨터조성을 하고 투자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보다 체계적으로 컴퓨터조성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전체적으로 안목을 보시고 사업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과속방지턱 도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공익근로요원이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저희 과에 공공근로자가 5명 있습니다. 다른 업무보조도 있고 그런데 실제 일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은 2명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다 요구를 했는데 다른 데로 배정이 돼서 저희 과에는 인원배정이 어렵다고 그 래 가지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67개 동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작업을 해봤는데 능률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페인트는 사주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해주고 해봤는데 능률성이 없습니다. 결국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인원에는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吳錦南委員 전에는 공공근로를 사용해서 과속방지턱 도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는 탄력봉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탄력봉 시설이 하나에 10만 5,000원 정도나 되는데 그렇게 비싸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그렇습니다. 재료만 저희들이 별도로 산다고 하면 값이 그렇게 나가지 않는데 보셨겠지만 도로에다 어떤 구멍을 뚫어 가지고 너트를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10만 5,000원이란 것이 작년엔 입찰 봐 가지고 했던 금액입니다. 금액도 작년금액으로 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吳錦南委員 시설하는 걸 제가 직접 봤는데 그냥 드릴로 구멍 4개 뚫어서 조이던데요. 저도 할 수 있는 시설이예요. 하여튼 이 탄력봉이 얼마나 비싼지는 몰라도 가격이 생각 외로 높은 것 같아요.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작년에도 吳錦南委員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비싸 이유 없다고 그러셨어요.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종로구에서 해야할 일을 요즘에 새로 온 종로경찰서장이 각 지역, 서울시를 다니시면서 의견수렴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종로구로 다시 넘어와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사는 동네도 3개 파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본 위원이 회의를 참석해 봤습니다. 우리의 민원이 60~70%를 차지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이야기가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민원인지, 경찰서에서 해야 할 민원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알고 하시는 것인지 낮부끄러울 정도로 참석을 해왔습니다만 가능한한 우리 지역 의원들이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局長님이나 課長님께서 수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岡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력봉에 대해서 吳錦南 前 副議長께서 하시다 말았는데 종로4가에 보면 완전히 돌 곳에서 차를 돌리지 않고

중간에 돌아오는 차가 있어서 제가 유심히 봤습  
니다. 일부러 망원렌즈를 대고 사진을 찍는 게 한  
달에 3,000건을 찍어요. 한 장에 3,000원씩 그 사  
람들한테 준다고 해요. 탄력봉 그게 꼭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課長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 吳錦  
南 前 副議長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모자라  
면 더 올리세요. 아셨죠?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십시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네. 安載弘幹事님!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都市管理局長  
답변 중에서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반  
영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자치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  
게 봐야 할 게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 민원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생되면 우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그거는 각과가, 건설국이나 도시관리국이 거의 비  
슷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무악공원이  
나 기타 도로건설 이런 여러 가지 추경에 편성되  
는 그러한 사유들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추경의 기본적인 목표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  
요. 아까 丁炳煥委員께서 財務局長한테 질문드린  
내용은 부채란 뜻은 지방채를 말하는 겁니다. 우  
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가 도로건설로 해가지고  
기타 90억을 발행했다가 약 한 20억 정도를 갚아  
서 6~70억 정도의 지방채가 남은 걸로 아는데 사  
실은 이 순세계잉여금을 각 국이 또는 각 집행부  
서들이 열심히 나누어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어떻  
게 보면 불필요한 지방채를 갚는 게 최우선이 돼  
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개설 같은 것도 여기 3건에 약 13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히는데 사실은 도로개설하자면 한도  
끝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  
시관리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그런 안목을  
가지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지  
금 여기 예산서에도 예산 정정한 내용이 있는데  
잘못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다는 것은

하지 않아도 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재정계획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나, 미래예측을 해서 그 미래를 예측한 그대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절차가  
결국은 중·장기재정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  
든요. 어떻게 보면 이 개별예산에 대해서 단가를  
따지고 타당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러한 내용들  
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종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으로 짜여져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여기 하수도 준설기 구매가 8,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유압식  
덮개 준설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  
어요. 그런데 이 기계가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저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1조를 구매하면 8,4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런 것도 중기적으로 볼 때 야! 이걸 아  
웃소싱을 해버리자. 기계를 사서 우리가 관리할  
게 아니라 차라리 민간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하수처리를 하도록, 준설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유압식덮개 준  
설기는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 용도폐지가 될 거  
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그러한 관점  
에서 보고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局長께서 느끼시는 게  
있다고 하면 답변 주십시오. 이게 과연 필요한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준설기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86  
년도에 구입한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94년도에 다 폐기되어  
야 하는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것 중에 운영이 어렵다고 보는 두  
조에 대해서 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조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  
로 저희들이 일부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에게 준설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  
설용역을 주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상용

인부를 활용해서 특히 이면도로 주변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용인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설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용역을 전체적으로 쬐을 때는 저희 직영인부가 준설기를 이용해서 준설하는 비용보다 2~3배 이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7조 정도는 저희 상용인부 숫자에 비례해서 직영할 수 있는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수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고 민간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선도로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교·검토해서 앞으로는 지선도로까지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책이 결정된다면 이 준설기가 일부 감소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민간용역이 이 기계를 임차해주는 걸로 한다면 安載弘委員님 말씀대로 활용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효율이 증가될지 이걸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우리가 유압기 덮개 준설기 7조를 가지고 있는데 개중에서 노후된 게 지금 2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아주 관리를 잘 하셨네요? '86년도에 사서 내구연수가 있는데 지금 '94년이니까 한 8년 전인데 8년 동안 유지·관리를 비교적 잘 했다는 것은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런 면도 있겠지요.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가지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도 5년만 딱 넘으면 대폐차라고 하는데 이 기계는 무려 16년 동안 유지·관리 한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인데 결국은 버로 쓰지 않았다는 얘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安載弘委員님 말씀대로 일부 지적사항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직영 상용인부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 준설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민원처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우기 대비해서 6월 말까지 상반기에 저희들이 주로 준설기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우기철이 지났을 때에 다시 퇴적됐을 때에 어느 일정기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활용하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구매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관리 및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세부 개선방안까지 검토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局長께서는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과연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악공원에 대해서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본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폭과 전체적인 길이, 이게 지금 주거 설명한 것은 비교적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글씨를 좀 잘 쓰려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설계가 있으면 설계도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먼저 예산이 2억 3,000인가 그렇게 들어가고 이번에 1억 5,000하면 3억 8,000인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거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도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즉 녹지과에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코스로 이용해서 인왕스카이웨이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계획엔 찬성을 합니다만 공원을 만들어놓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자고 여기를 올라오려면 굉장히 가파른 언덕을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잘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무악아파트가 그 밑에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접근하기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산이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집행되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고양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억 5,000만 원인데 한 2억 정도 들여도 훌륭한 공원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安載弘委員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한 10억 정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고 하는 뜻에서 5억으로 작년에 낮춰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위원님들이 작년에 워낙 예산이 팍팍하다 보니까 우선 급년에는 기반공사비만 반영하고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조경이나 식재공사비를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현재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을 예상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5억도 조금 많은 느낌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낙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우선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의 안전에 우선순위를 뒤편 안전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최우선을 뒀고 인근에 접근성은 떨어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겠습니다. 하면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특히 여름이나 가을 식사 후에 산책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왜 그 얘기를 자꾸 드리나 하면 우리가 지방채가 있어요. 지방채가 있는데 그 지방채가 도로의 개설이나 그러니까 공원 같은데 아까 국장 답변대로 10억을 여기서 투입하려고 계획했다가 5억으로 반을 줄이고 5억조차 확보를 못하고 3억 5,000으로 이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초기반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로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 50억을 가져왔고 또다시 40억을 가져와서 90억의 지방채를 안고 있다구요. 그렇다면 물론 투자의 우선순위나 그 지방채 발행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의 시각과 의원들이 생각하는 시각과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추경 편성하는 모든 사업은 투자사업은 좀 제한을 하고 지방

채를 우선 상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각과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스스로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액이 4억입니다. 거기 부족한 액수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주셔야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우리 都市管理局長은 참 패기가 넘쳐서 좋은데요 하여간 잘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수고하셨습니다.

都市管理局長! 돈이 있어야 공사할 수 있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福同** 더 질의하실 분?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네. 李憲九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憲九委員** 李憲九委員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미반영된 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전부 적어서 보내 주십사 해서 제가 청운동에 있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했었습니다만 신교동 2번지와 청운동 56번지의 길을 새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 인왕산 수목원이 오늘날 돈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까 安載弘委員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가지 않아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구정질문 때도 그랬습니다. 거기다 길을 만들어줘서 그 인근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에게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아이들로 하여금 인건비 들이지 않고도 공원을 잘 다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해 도로계획개설에 대해서 올렸습니다만 담당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말씀하신 지역은 공원용지 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선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도시계획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지역과 일반지역이 겹쳐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로 공원 지역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일단 그어야 도로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 검토했으나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시계획선을 넣을 때는 사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된 전제 하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은 현장 여건상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선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러한 두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누차 일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현실 여건을 감안 해주시면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李憲九委員 시간을 두고요? 저는 이번 3기로 해서 구의원 그만 할 계획입니다. 거의 확정입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청운동지역의 담당구의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鄭泰淳議員이 있습니다마는 그 양반 거기에 대해서 전부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몰라요. 저는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자꾸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것을 개설함으로써 육인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길과 연관이 되고 그러면서 수목원을 가로질러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돈도 한 10억 제가 아무래도 10억 미만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도로 중장기에 반영되지 않은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담당국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담당계에 해서 그것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미뤄가지고 되겠느냐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안된 지역에 일부 현장여건상 사업비는 도시계획선이 기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 중에 선정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아예 도시계획선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놓을 적에 전제조건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 입장에서서는 도시계획선이 없는 지역에 사업비를 우선 확보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두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아예 있든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할 수가 있는데

○李憲九委員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제가 올렸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지금 말씀하신 지역과 부암동 지역에도 일부 소방도로가 확보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저희들이 19개동을 조사해서 도시계획선이 없으면서 도로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져서 그 지역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사업비를 내년도에 미리 보고를 드리고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선을 짚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憲九委員 왜냐하면 이 지역은 정말 소방 사각지대입니다.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해줌으로써 인해서 많은 거주자 라인이 그어져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혜택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 생각같아서는 자연공원 내니까 보상비 줄 필요도 없잖아요. 보상비 주지 않고 얼마든지 도로개설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수목원도 살고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지역이니까 내년 예산에 도시계획선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세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앞으로 다른 임시회 기간 중에 그러한 지역을 조사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憲九委員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洪承台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洪承台委員 죄송합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조금 어긋나는 감이 있어 미안하지만 李憲九委員님의 말씀에 더불어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이 두분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공평동, 인사동,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로빌딩 뒤에 재개발지역이 되어 가지고 아주 건물도 못짓고 해서 아주 낙후된 건물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불이 나면 막다른 골목이 돼서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한번 나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삼성에서 종로타워를 지음으로서 기부채납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10평만 주면 그 길이 확 짧습니다. 막다른 길이, 이것은 종로구에다가 기부채납한 대지니까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이 안들어가니까 중장기계획에 안들어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넓어요. 기부채납을 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서를 저한테 갖고 온 게 있어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공평동, 인사동 하나로빌딩 뒤편과 지금 삼성빌딩 뒤편 그 사이에 삼성에서 도심재개발 하면서 기부채납한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공평지구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전체 썬터가 포함된 지역인데 각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 공공시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일부는 공원으로 들어가야 될 땅이 있을

거고 도로로 조성될 땅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원이거나 도로 도심재개발구역 내 도로나 공원은 시행자가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사업개발 시기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각 구역별로 삼성, 공평 아마 18지구가 되는데 그 부분은 빨리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놓고 도로나 공원 조성해야 될 공사비는 저희들한테 예치를 해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나머지 현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부채납 해야 될 땅도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부지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동시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관에서 개입해서 도로공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洪承台委員 도로공사를 안하더라도 할 동안만 빌려주면 돼요. 길만 쓰고 일을 하게 되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그것이 좀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주민들이 거기에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축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洪承台委員 신교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거기 청와대에서부터 신교동 도로가 굉장히 아주 쾌적하게 뚫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면 29억 우리 특별회계 주차장관리에서 2001년도에 29억이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신교동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55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맞습니다.

○洪承台委員 그쪽에 길을 뚫은 것은 잘했습니다. 마땅히 뚫어야 되죠.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굉장히 도로에 주택이 부유층이 되어서 주차장이 다 있어서 건물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태여 거기다 55억씩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그럴만한 가치성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다

부촌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지금 洪承台委員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신고동 66번지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창신1동 89번지 2개소를 작년도에 55억에 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는 기 투자심사 및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 지역의 주차 수요공급을 다 판단해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수요를 다 판단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결정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洪承台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洪承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安載弘幹事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載弘委員 조금 전에 洪承台委員님께서 건설교통국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대형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차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서 결정해서 의회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고 치밀하게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 내용대로 지금 자료가 있으면 한번 쭉보실래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만들어지겠지만 언제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그러면 거기에 30억에서 40억이라는 돈을 또 공사에서 몇 억이라는 돈을 더 넣어서 그렇게 넣어놨을 때 투자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이러한 것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했다. 실제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고 봐요. 기왕이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어떻게 해서 주차수요공급이 파악이 되고 보고했는지 보고된 내용이 있으면 어차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했을 테니

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간단하게 답변드린 것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의회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구유재산 의회에 상정해서 재무건설에서 했던 게 있어요. 세부적으로 치밀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별도로 했습니다.

○安載弘委員 의회가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의회 역할이 제대로 되어야 했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吳弼根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弼根委員 추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비원 앞에 지금 역사탐방로 공사로서 걷고싶은 거리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吳局長님 알고 계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吳弼根委員 도시관리국장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종로 건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혜화동에서 구의회에 올 때마다 상당히 좀 순라골 옆에 거기 불량주택만 보면 정말 서울에 이러한 데가 있는가 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번 질의를 해서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빨리 불량주택을 없애고 거기다가 공원이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을예산에 10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입니다. 10억 반영했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러면 거기에 총 불량주택을 없애고 공원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50억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한 60억 정도 보상비와

공원조성을 포함해서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억이 조성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앞쪽만 일부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吳弼根委員 연차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장님을 면담을 한번 하세요. 역사탐방로도 이렇게 좋은 거리를 만드는데 옥의 티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리를 만들면 뭐하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좋은 거리를 비원까지 와 가지고 거기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도 吳弼根委員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시장님 면담 이외에 부시장님 면담 3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면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투자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청도 여건이 시청은 시청대로 월드컵 때문에 밀레니엄 공원 조성하는데 공원환경 녹지분야에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시청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청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吳弼根委員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방면으로 대응을 하자는 말입니다. 시의원한테 압력을 넣든지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월드컵 전에 끝낼 수 있도록 반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洪承台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承台委員 吳弼根委員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 추가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떻게 해서 시장님을 토요일에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 우리 서울시내에 종로가 문화일번지고 또 문화일번지로서의 정도 600년의

우리 조상의 문화가 숨겨있고 살아움직이는 것이 경복궁, 돈화문 또 종묘가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는, 이 거리에 외국인들이 와서 서울시에 와보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물론 인사동도 있겠지만 그것은 낙후된 센터 조성을 갖다가 몇조씩 운영하는 서울시에서 100억 내지 150억만 가지면 비원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유소를 사가지고 놀이마당을 만들어서 국악로도 하고 어가행진도 하고 사물놀이도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볼거리를 만들자. 북경에 가도 있고 일본에 가도 있고 고궁에 나오면 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서울시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장님은 참고적으로 잘해서 해봐라 지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알아봐라 했으니깐 우리 국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곳은 정말 우리 종로에서 꼭 살릴 수 있는 문화의 탐방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가지고 꼭 좀 도시관리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가 본론만 얘기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지금 일부 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차선을 도색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여러분들이 도색작업을 하기 전에 수요 판단을 해서 하겠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하느냐 하면 평창동은 단독주택 크기가 정문에서 볼 때 20m가 넘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자기 대지의 경계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차선을 2개를 그어요. 그러면 일정한 거리 500m구간 안에 단독주택이 만약에 30개가 있다면 주차수요는 그집 스스로의 차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사실 그쪽에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작업지시를 받은 도색작업원은 도색작업을 해나가고 또 그곳을 사용해야 할

주민들은 반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있더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다른 동에서는 그런 예가 보고도 없고 특수한 경우인데 저희들이 지워달라는 부분은 지워주고 도로선을 긋기는 하지만 꼭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집에 차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평창동 지역에는 등산을 오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차를 아무 데나 대는 것보다는 라인 안에 내놓으면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편리한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빼달라면 빼주고 그러달라면 그어주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도색 라인 긋는 것이 보통 작업비가 1m 긋는데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종전에는 페인팅을 했는데 요즘에는 무슨 고무벨트를 붙이더라고요.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제가 정확한 가격은 기억을 못하는데 전체 라인 하나 긋는데 4만 5,000원 가량 듭니다.

○**安載弘委員** 차가 주차하는데 한 라인을 긋는데 4만 5,000원?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왜 전부다 그어놓느냐 하면 앞으로는 5.5m이상 도로에는 전부다 주차구획선을 긋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시장방침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창동 경우에만 특수한 경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창동지역에 저희들이 개인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성과품에 의해서 구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安載弘委員** 그래서 李相道課長한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만약에 아까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 속하겠습니까마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을 때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은 오더를 받았으니까 강행을 하려하고 주민은 굶지말라고 하고 이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데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저희한테 연락만 오면

○**安載弘委員** 작업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지고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것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예, 알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리고 吳局長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하수도 준설용 바켓 설치 한 대만 합시다.

○**土木課長 李宗哲**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직영인부가 2개조, 민간인 이전해서 용역을 주는 게 2개조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차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86년도 구입한 것이 7개조인데 작년에 교체해서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조를 구입해 가지고 우선 아쉬운대로 저희들이 3개조를 제대로 하자 해서 올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들이 정비를 잘해서 많이 쓴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제대로 가동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동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완전히 어케준설로 모든 준설작업을 이루어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7조를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인부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상용인부가 하수도개량반에 10명입니다. 한조에 3명씩 작업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인부 2개조하고 민간이전 용역 해서 2개조 해서 지금 4개조가 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민간용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土木課長 李宗哲** 간선도로 흡입준설하고 뒷골목은 좁다 보니까 바켓설기가 안 들어가면 작업을 못하니까 장비를 넣어서 흡입준설을 하는, 상당히 큼니다. 6m이하 도로는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6m이하 도로 뒷골목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천상 흡입준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겁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예, 그래서 저희들 상용인부를 자꾸 줄이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가동을 못하고 민간이전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 그러나 소요는 줄지 않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준설기가 6m이하 도로로는 못 들어가니까 작은 준설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사는 게 낫지 8,400만원 주고 사서 제대로 가동도 못하는 거 기계를 살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土木課長 李宗哲 사야 뒷골목 우선 아쉬운 대로 가동작업이 되겠다. 겨울철이라도 항상 상용 인부가 있으니까 가동이 되는데 일부 용역이라는 것은 불과 예산편성이 6개월밖에 안됩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준설용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 준설용역이 6개월치밖에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土木課長 李宗哲 예.

○安載弘委員 그것은 왜 그렇죠?

○土木課長 李宗哲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1조만 삼시다. 2개 아니에요? 이쪽에 1조 놓고 이쪽에 1조 놓고 서로 와이어로 걸쳐서 쪽 잡아놓으면

○土木課長 李宗哲 그것이 1조입니다.

○安載弘委員 2개가 1조입니다. 2조니까 2조면 4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예.

○安載弘委員 1조만 삼시다. 양쪽에 하나만 그렇게 해서 해요.

○土木課長 李宗哲 그러면 내년에 또

○安載弘委員 토목과 바쁘면서 일도 안하면서 무슨 기계를 산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내년도에 또 사세요. 다른 예산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河局長님! 이게 평창동이에요. 평창동인데 저희 지역이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녹지과 직원들한테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청소과 쓰레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커멓게 된 것은 울타리인데 무슨 울타리냐 하면 칩대스포럼으로 만들어진 울타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재척지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는 땅인데 여기에 소위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텐트를 치고 하늘에 기도를 했던 장소인데 워낙 시끄러워서 이것을 울타리를 쳐서 이것을 못하게 했어요. 알고 계세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고 있습니다. 울타리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소란을 피웠던 지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래서 건설국 예산을 깎아 가지고 여기 울타리 좀 치려고 하니까 1대 뺐시다. 안된다고요? 꼭 해야 됩니다. 안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데 2,700만원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河局長님! 녹지계장님한테 자세히 좀 보고 좀 받아주십시오. 이 자료가 녹지과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녹지계장이 나한테 보고해준 자료입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한테는 보고를 안했는데요 녹지계장을 혼을 좀 내줘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안하고 위원님한테 먼저 했단니까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혼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수정할 경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약 5분에 걸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2分 會議中止)

(15時4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심사시 결과를 보고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종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5分 散會)

○出席委員 9人

金福同 安載弘 吳弼根 洪承台  
李憲九 吳錦南 丁炳煥 朴鍾植  
李炯述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財務局長 董連浩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財務課長 趙秀完  
稅務1課長 趙朝翼  
稅務2課長 徐明一  
地籍課長 徐燦奎  
住宅課長 宣圭景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建築課長 李漢九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土木課長 李宗哲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交通指導課長 李基朝